

대신대학교 감사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 직무수행 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감사부서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1. 위원장(1인) - 감사부서의 장이 위원장을 겸직한다.
2. 위원(5인 이하) - 본교 소속 정규 교원 및 직원
3. 간사(1인) -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
4. 외부위원 -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심의·의결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의결권이 제한된다.

④ 위원은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제4조 각 호의 심의·의결사항 중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
2.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청 및 이의신청
3.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사의 직무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과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